

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-521호

「K-바이오랩허브 구축사업 운영관리 등에 관한 규정」을 제정함에 있어,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년 8월 26일
중소벤처기업부장관

「K-바이오랩허브 구축사업 운영관리 등에 관한 규정」 제정(안) 행정예고

1. 제정이유

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하는 K-바이오랩허브 구축사업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로 정하기 위함

2. 주요내용

가. 목적 및 용어의 정의, 적용범위(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제정)

- 주관부처, 협력기관, 운영위원회, 사업기획위원회, 전문기관, 운영기관, 사업단 및 사업단장 등 용어설명 및 적용범위 명시

나. 조직과 기능(안 제4조부터 제9조까지 제정)

- 기관별 역할을 규정

다. 사업단 구성 및 운영(안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 제정)

- 사업단 설치, 사업단장의 역할 및 선정, 사업단 구성과 준수사항, 복무 및 보수 준용, 직무권한의 위임 등을 규정

라. 사업 관리 및 시설 운영(안 16조부터 제19조까지 제정)

- 사업의 관리 및 수행은 센터의 관련 업무절차 규정을 준용, 계약 및 관리는 관련 법령과 센터의 수탁사업 업무처리지침 준용

마. 연구개발과제(안 제20조, 제21조 제정)

- 과제 선정은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 및 「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」 준용, 평가 및 결과는 운영위 심의

바. 규정의 제·개정 및 위임(안 제22조, 제23조 제정)

- 주관부처 승인 및 운영위원회 의결을 통해 제·개정,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센터 규정을 준용

사. 고시 재검토 기한(안 제24조 제정)

- 규정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3년마다 동 고시에 대한 재검토 실시

3. 의견제출

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(참조 : 기술혁신정책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(반대 시 이유 명시)

제 정(안)	수 정(안)	수 정 사 유

나. 성명(기관·단체의 경우 기관·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의견제출 방법 : 전자우편, 우편 또는 팩스

1) 전자우편(이메일) : asu1004@korea.kr

2) 주소 : 세종특별자치시 가림로 180(어진동), 세종파이낸스센터 3차
중소벤처기업부 기술혁신정책과

3) 팩스 : 044-204-7759

라.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기술혁신정책과
(전화 044- 204-7751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